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수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12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채수지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9명)

1. 주문

- 최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임.
- 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및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교사의 실제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에 신고되어,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가 해제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정서적 학대 조항을 개정하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방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등

4. 이송처

- 국회,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 5월 10일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 241건 가운데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됐다. 문제는 학부모에 의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학부모나 학교가 교사의 교육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로 민원을 넣으면,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무원법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아동학대)를 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상당수 경우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만으로 교사들을 바로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하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불만을 품거나 민원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신고도 예외가 아니다.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모호해 이를 악용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상황이다.

서울교사노조가 7월29일~30일 이틀 간 서울시내 교사 1만 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꼽았다.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조치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8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